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㈜ 한국씨티은행
문의가능 전화번호 : (02) 3455-2504 / 3455-2567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슈로더 브릭스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)
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A-1 (주식)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형), 신탁형, 공모형, 개방형, 추가형, 모자형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12.02.13 ~ 2013.02.12
- 라. 집합투자업자: 슈로더투자신탁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국민은행, 농협, 대구은행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동양증권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신한금융투자, 외환은행, 우리은행, 우리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하나대투증권, 하나은행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화증권, 현대증권, HSBC 은행, SC 은행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- 2012.07.18 규약 변경

조항	변경전	변경후
제50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	② <생략>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	② <생략>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.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.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선임일	회계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(원)	계약 방법
2005.08.31	삼일회계법인	1 년	1,325,000	서면

* 회계감사인 선임비용은 1년에 한번 회계감사 수행을 위해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A (주식)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임.
* 2013.02.12일 현재 슈로더 브릭스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)의 회계감사인 선임비용은 3,678,200원이며 관련 자투자신탁(또는 종류형 투자신탁)에서 순자산가치에 비례하여 부담함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□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합니다.

□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및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□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본 집합투자기구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.
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.
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습니다.

□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 사항 없음.

□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1항 제1호 (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감사의무 면제)에 해당되어 본 항목은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.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, 투자원리금에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.

-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(www.schroders.co.kr) 및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 홈페이지를 이용 할 경우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자산 결제 및 보관을 위하여 씨티은행 홍콩(Citibank N.A. Hong Kong Branch)을 해외보관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보관 대리인은 동 업무를 각국의 보관 대리인에게 재위임 할 수 있습니다 .